

5·18항쟁기 여성피해 진상규명의 과제

—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

안 진*

목차

I. 머리말	III. 성폭력 진상규명을 위해
II. 여성의 저항과 피해: 젠더 관점에서 본 여성의 피해	IV. 성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정책적 제언 V. 맺음말

Ⅰ 국문초록 Ⅰ

이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항쟁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국가폭력의 여성인권유린, 특히 성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시에 여성들이 겪었던 전반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의 미비점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5·18항쟁 초기에 계엄군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과시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여성피해자들은 사망, 부상, 연행과 구금,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

본론의 고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성폭력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성폭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 특별법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의 진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일 : 2020. 7. 22., 심사개시일: 2020. 8. 3., 게재확정일 : 2020. 8. 18.

을 밝히고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이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특별법의 조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의 규정에 ‘성폭력범죄’를 추가하여 5·18항쟁기의 성폭력을 본격적인 조사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5·18진상 조사위원회’ 내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당시’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개정하여 조사범위와 피해구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5·18항쟁 이후 수사과정과 구금기간 동안에 발생한 성폭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조사’에 초점을 두는 등 특별법의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억압된 경험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준전시상황에서 발생한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볼 수 있다면, 좀 더 포괄적인 인권법체계 속에서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 과시적 성폭력, 젠더 정의, 2차 피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성폭력 전문위원회

I. 머리말

오월의 노래 가사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구절¹⁾이 상징하고 있듯이 국가폭력²⁾이 여성들에게 행사될 때에는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다른 방식으로 자행된다. 법여성학자 맥किन(Catharine MacKinnon)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시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된다.³⁾ 지금까지 전시범죄를 다룰 때 성폭력이 간과되어 왔듯이 5·18항쟁⁴⁾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적 침해행위는 법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고, 항쟁에 대한 연구나 역사기록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5·18항쟁에서는 국가폭력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행사되었기 때문에 제주4·3사건이나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성폭력 발생 자체 건수는 적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침해의 심각성이 적은 것은 아니다. 성폭력 행위는 가해당시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에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2차 피해와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전쟁이나 한국전쟁과 같이 장기간의 전시상황에서든 5·18항쟁처럼 단기간의 준전시상황에서든, 전시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공통점은 단순히 가해자의 성욕에 기인하여 발생한 폭

1) 잘 알려진 '오월의 노래'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두 구절로 시작된다.

2) '국가폭력'이란 용어는 국가의 공식 정책과 방침, 제도와 법, 이데올로기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으로 물리적·직접적·가시적인 폭력 외에도 상징적·간접적·비가시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Catharine MacKinnon, “전쟁 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조시현(편역), 「현대사상과 인권」(옥스퍼드 엠네스티 강역),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109면.

4) 5·18항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쟁의 성격규정에 따라 '5·18 광주항쟁', '5·18 민중항쟁' 등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1995. 12.21. 법률 제5029호)의 제정 이후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항쟁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립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규정된 개념이므로 항쟁의 주체나 국가폭력의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미흡한 개념이다. 2020년 현재에도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평가가 미완성인 상태이므로 이 글에서는 중립적인 개념인 '5·18항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력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여성을 타자화하여 ‘굴복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시상황에서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는 이념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서 나오는 증오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을 성적 차이와 결합시켜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인종적 학살(genocide)이 아니라 성적 학살(gendercide)이 된다.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공동체의 상징적 소유물로 표상되며, 여성의 개인적 성적 수치는 그 여성이 속한 가부장적인 공동체의 수치이자 그 공동체 남성들의 수치이다.⁵⁾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적이 되는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공개되도록 자행하는 성폭력은 상대편 공동체의 남성들에게 폭력행사자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모욕과 위협을 각인하는 하나의 의례로 해석되기도 한다.⁶⁾

5·18항쟁에서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의 피해는 2016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도 확산되어 가면서 피해 여성이 성폭력 경험을 폭로⁷⁾했던 2018년 5월에 이르기까지 이슈화된 적이 없었고, 더구나 국가기구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적은 전혀 없었다. 이 연구는 5·18항쟁을 전후하여 여성에 대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피해를 정리하고, 여성들이 겪은 피해들 중 특

5) 하세가와 히로코, “의례로서의 성폭력: 전쟁시기 강간의 의미에 대해서”, 코모리 요우이치(小森陽一) 외, 「국가주의를 넘어서」, 이규수(역), 삼인, 1999, 342면.

6) 안진, “5·18 광주항쟁에서의 여성의 피해, 그리고 생존”, 「여성과 평화」, 제4집,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5, 244면.

7) 정대하, “충격적인 5·18 성폭행, 진실 밝혀 단죄해야”, 한겨레 신문, 2018. 5.9; 정대하, “5월의 폭력에 왜 여성들은 말하지 못했나?” 한겨레 신문, 2018. 5. 10일자 참조.; 연합뉴스, 2018. 5. 11자 보도; SBS, 2018. 5.12.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충성”, 2018. 5.12.

히 성폭력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상을 밝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19년 12월 26일에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원회'로 약칭함)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여성의 저항과 피해: 젠더관점에서 본 여성의 피해

5·18항쟁에서 대다수 여성들은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항쟁에 관여하였던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갖가지 피해를 겪었다. 항쟁 이후에는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고, 사망·구속·부상 등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이 글에서는 II장에서 먼저 피해여성들을 사망자, 부상자, 연행자·구속자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피해 현황을 개괄하고, III장에서 여성들이 겪은 피해 가운데 성폭력 피해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향후 진상조사위원회가 5·18항쟁에서의 성폭력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여성들의 저항활동

가. 항쟁 지도부 출범 이전의 여성들의 활동

5월 18일까지는 시위대의 중심세력이 학생들이었고 이 때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주로 여대생들이었다. 그러나 5월 18일 저녁과 5월 19일 동안에 평화적 시위에 대해 계엄군의 무차별 공격이 감행되자 19일부터는 나이와 계층을 불문하고 여중, 여고생부터 주부,

할머니들에 이르기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다양해졌다. 19일 오전 11시 경에는 중앙여고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광산여고 학생회 간부들이 가두시위를 결의했다. 계엄군의 무차별한 학살과 집단발포로 부상자들이 폭증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나이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도 헌혈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시위대에게 음료수, 김밥을 전달하는 등 항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마을 주부들과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의 노점상 아주머니들은 시위와 물적 지원에도 대거 참여했다. 항쟁초기인 19일 오전 10시부터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대의 후방에서 보도 블록을 깨서 시위대의 전위에 날라주거나 돌을 모아 전해주는 등 투석전에 동참했다. 참혹한 학살의 사실이 알려지자 평범한 아주머니들도 공동체 성원을 보살펴야한다고 나서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이나 반 단위로 쌀을 거두고 모금하여 김밥, 주먹밥, 김치, 마실 것 등을 마련하여 시위대에게 신속하게 공급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시위대의 선두에서 계엄군과 직접 대항하기 보다는 시위대의 후미에 참여하면서 ‘계엄령 해제’ 등을 비롯한 구호를 외쳤다. 또, 시위대에 화염병이나 돌맹이를 날라다 주기도 하였고 물수건, 마실 것, 최루탄의 연기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치약 등을 날라다 주었다. 여성들의 지지와 헌신적인 활동은 시위대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고 함께 공동체를 지킨다는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계엄군이 패퇴한 후인 22일부터는 이름 없는 많은 아주머니들이

도청 가까이에 있는 YWCA 빌딩 안에서 여성들이 맡고 있었던 취사와 모금에 참여하여 항쟁지도부가 원활하게 항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공식적인 미디어 수단들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불야학’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사회보’라는 소식지가 만들어졌고, 문화운동을 하는 극단 ‘광대’의 청년여성들과 ‘송백회’라는 여성단체의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매일 열리는 대규모의 군중집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다. 여성들의 활동은 시민군들처럼 총을 들고 계엄군과 직접 싸운 행동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시민군들에게 투쟁의 의로움을 확인시켜주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항쟁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한 여성은 당시의 절대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일체감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자들은 도망갈 생각을 전혀 안했거든요. 왜냐면 여자들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있겠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녹두서점에) 근거지를 만든 거죠...그 때 거리에서 만난 시민군들과 얘기를 해보면 여자들도 이렇게 시민군들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총을 든 시민군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⁸⁾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인 22일 이후에는 광주시내의 제조업체의 여성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항쟁에 참여하였다. 남성 사업장으로는 아세아 자동차, 화천기공사, 남선 선반의 노동자들이 여성 사업장으로는 전일섬유, 일신방직, 전남방직, 광주어망, 남해어망, 로케트 전기의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착용하고 버스, 트럭 등

8) 녹두서점의 주인인 정현애의 증언 참조. 5·18연구소, 「5·18민중항쟁 증언자료집」 1, 전남대출판부, 2003.

대형 차량으로 항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여성사업장의 경우 회사 측이 직원들을 못나가게 하였기 때문에 21일 까지는 거의 나오지 못했지만 22일 이후에는 대거 참여하였다. 어림잡아 시위대열의 1/3 이상이 여성이었는데 이들 여성들 중에는 대학생보다 노동자와 주부의 참여가 압도적이었고, 차량시위에는 주로 남성이 참여하였지만 차량 후미의 가두시위에는 여성들이 많았다. 일부 여성노동자들은 무기접수를 위해 광주 외곽지역을 다녀온 시위차량에도 동승하였고, 해남, 강진 등의 광주 외곽의 차량원정시위에도 참여하였다.

계엄군의 초기 학살에서부터 광주시가지에서 계엄군이 패퇴한 10여 일 동안의 광주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여성노동자들의 아래와 같은 증언은 절대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연대감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때는 광주 시민들이 모두 한 식구 같았어요. 모든 일이 진짜 내 일 같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죽더라도 꼭 같이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 같이 한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⁹⁾

나. 항쟁지도부 출범 이후의 여성들의 활동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인지 끝까지 투쟁할 것인지를 놓고 도청 안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5월 25일 밤 10시에 여성들의 활동 거점이었던 YWCA 빌딩 안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왔던 윤상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사회운동권의 주요인물들은 도청 안에 새 지도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기획조, 홍보조, 모금조, 취

9) ‘들불야학’의 여성노동자, 오경민의 증언 참조. 5·18연구소, 「5·18민중항쟁 증언자료집」 1, 전남대출판부, 2003, 191면.

사조¹⁰⁾ 등을 새로 조직하였다. 그에 따라 도청에서는 초기에 조직된 수습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민주시민투쟁위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쟁지도부가 등장하였고 여성들의 활동도 더욱 조직화되었다. 모금활동, 홍보 등은 여성운동단체인 ‘송백회’¹¹⁾의 멤버들이, 쫓겨간회는 문화운동을 하는 극단 ‘광대’가, 취사팀은 ‘가톨릭 노동

10) 김성룡 신부의 부탁으로 도청 취사팀으로 JOC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들어 오기 전에도 여고생 주소연(18세, 광주여고 3학년)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학생, 주부들이 도청에 들어와 밥 짓는 일을 했다. 도청 민원실 지하 구내식당이 취사 실이고 밥은 2층 강당으로 옮겨 먹어야 했는데, 항쟁기간 중 아예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취사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다. 24시간 계속해서 밥을 지어야했기 때문에 2개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일했는데 1조는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2조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전용호, “5월항쟁과 여성의 투쟁”, 광주여성재단 콜로키움 발표자료, 2019, 6면 참조.

11) ‘송백회’는 일반 시민대중들과 광주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1978년 12월 20여명의 여성들이 모여 창립된 송백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회원들이 50-60명으로 늘어났으며 항쟁 직전에는 도청부근의 YWCA빌딩 안에 있는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소모임 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의 만행이 시작되자 초기부터 당시 광주지역 사회운동가들과 학생운동가들의 사랑방이었던 ‘녹두서점’에 모여 윤상원등 사회운동권의 남성들과 함께 상황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계엄군의 학살에 대응해 나갔다.

이들은 25일 이후에는 활동거점을 도청에서 가까운 YWCA빌딩으로 옮겨 도청에서 광주항쟁의 새 지도부가 조직되는 데에도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였다. 송백회의 여성들은 그동안 광천공단의 모 처에서 ‘투사회보’의 인쇄를 맡아왔던 박용준 등 ‘들불’야학의 노동자들을 이곳에서 도왔다. 또, 대안매체인 대자보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여 시민들에게 객관적 상황과 행동지침을 알렸다. 항쟁 초기에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송백회의 여성들은 YWCA 건물로 활동장소를 옮긴 후 도청의 항쟁지도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선전기획 활동과 취사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였다. 이들은 기획조, 쫓겨간회조, 가두방송조, 대자보조, 인쇄조, 취사조, 대민업무, 시체처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중들을 결집시켜갔다. 송백회의 여성들은 도청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열린 군중집회(시민쫓겨간회)를 준비하고 대자보를 작성하여 시민들과 상황을 공유하였다. 송백회의 여성들은 극단 ‘광대’의 여성단원들과 미술전문가인 홍성담 등과 플래카드, 피켓, 대형 허수아비 (전두환의 화형식에 필요) 등을 제작하여 시민 쫓겨간회를 준비했다.

청년회'(JOC)의 여성노동자¹²⁾들이 맡기로 하여 3개 팀이 꾸려졌다. 물론 사회운동조직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텔리층이 이렇게 움직일 동안에도 이름 없는 기층 여성들의 활약과 지원은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주방책임을 맡았던 '가톨릭 노동청년회'(JOC)의 여성노동자 이정과 윤청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름 모를 주부들이 만들어준 김밥, 달걀, 음료수, 김치 등 각종 음식물의 엄청난 양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고 한다. 여성들의 연대와 결속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시민결기대회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1차로 개최된 이후 26일 오후 3시 5차 마지막 대회까지 열렸는데 결기대회를 위한 여성들의 준비와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문화선전팀 '광대'의 회원인 여대생 이현주(전남대 국문과 4년)가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한 여고생이 '민주시' 등을 낭송할 때는 모든 시민이 따라 올

12) 가톨릭 노동청년회(JOC)의 정향자의 증언에 의하면 24일 김성룡 신부로부터 도청에서 발할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으니 여성 취사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JOC여성노동자들 8여명이 도청으로 들어갔는데 도청 취사조에는 여중생도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향자의 증언 참조.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139면.

가톨릭 노동청년회(JOC)의 여성 노동자들은 일요일인 5월 18일 년 초부터 시작된 로케트전기 임금투쟁의 성과평가와 민주노동조합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자교육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이 교육은 시내 중심가인 도청부근에 위치한 YWCA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사례지오 고등학교 강당 두 군데에서 로케트전기, 삼양제사 일신방직, 전남제사, 전남방직 등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교육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은 6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항쟁의 주역이 되었다. 도청 인근에 위치한 YWCA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도 교육을 계속하다가 전경들의 교육장 난입으로 교육이 중단되자 대부분 가두투쟁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두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항쟁의 전환점이었던 20일 저녁의 차량시위에도 참여하였고, 계엄군의 재진입이 임박한 25일 이후에는 JOC의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취사를 담당하였다. 도청에서는 취사뿐만 아니라 대민업무(행불자 접수, 출입증 발급)와 시체처리를 맡았다.

었다. 5월 26일 오후 3시 마지막 쫓기대회인 제5차 쫓기대회를 마치면서 계엄군이 내일 새벽 진군한다는 비보와 함께 최후까지 항쟁할 전투조가 150여명으로 편성되었다. 전투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동안 여성취사팀이 준비한 식사가 나왔고 이들은 ‘최후의 만찬’이라 이름 지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 때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싸우기를 각오하고 무기를 원하는 여학생도 있었지만 남성들이 만류하였다.

도청지도부는 마지막 전투에서 여성들을 제외시키자고 결정하였고 마지막 날 밤인 26일 밤 11시쯤 YWCA 빌딩에 남아있던 여성들과 도청 취사부에 남아있던 여성노동자들 10여명에게 피신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7일 새벽 2시 임영희, 이행자, 정유아 등을 비롯한 ‘송백회’회원들이 마지막으로 다른 동료들 50여명을 인솔하여 피신하였다. 그러나 26일 저녁 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박영순과 여중생 김미숙, 도청에서 상황실 활동을 해왔던 이경희, 김순희 등은 도청에 남아 있었고, 박영순은 27일 새벽 도청에서 항쟁지도부가 작성한 메모로 시민들에게 마지막 방송을 하였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¹³⁾

2. 여성의 피해 현황

계엄군이 진주 초기에 여성들에게 유난히 잔혹했던 학살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항쟁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맥ки는

13) 광주광역시 사료편찬위원회, 1998, 136면; 2018 2. 7. 박영순의 구술증언 참조.

의 표현대로 여성들은 전시 상황에서 남성들과 다르게, 좀처럼 그렇게 되기 힘든, 다양한 방식으로 유린당한다. 대개 전시상황에서 폭력의 가해자들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 전시 상황과 유사했던 광주항쟁의 경우에도 시가지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시내 곳곳에서 닥치는 대로 여성들에게 남성들을 공격하는 방식과는 다른 과시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공수부대원들은 광주라는 공동체의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행사자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공격의 대상이 된 집단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공격의 표적으로 여성들을 선택하여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성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성적 피해의 경험은 피해여성들¹⁴⁾의 침묵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¹⁵⁾

그런데,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폭력들은 시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누이나 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겁함과 함께,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¹⁶⁾

14) 이 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낙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내용을 서술하였다. 다만, 국회청문회나 잘 알려진 출판물을 통해 공식적인 증언자로 알려지게 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였다.

15) 수사과정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성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동적인 가두방송으로 항쟁 도중에 군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던 전옥○는 수사과정에서 겪은 성고문을 증언한 용기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주항쟁에서 그녀의 활동과 수사과정에서 겪은 폭력은 <모란꽃>이라는 회곡으로 극화되기도 했다.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192-204면.

16) 항쟁지도부인 <민주시민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종배(조선대 무역학과 3학년)는 21일 도청 앞 시위대열서 교복 입은 여학생이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홍안파로 데려갔으나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김종배는 그날 오후부터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5·18항쟁의 저항 서사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김영희는 ‘여성을 지키지 못한 남성들의 공분’이 남성들의 저항의 동력

당시 여고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5월 19일 광주근교에 위치한 나주 남평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군인 5명에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녀의 피해를 비밀에 부친 가족들의 태도로 인해 행방불명이 되었던 그 여학생은 항쟁 7년 후인 1987년 3개월 정도 나주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항쟁관련자 부상판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진료를 받기도 했지만 평생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5·18항쟁의 희생에 대한 초기의 예술작품이 〈꽃잎〉이나 〈모란꽃〉, 〈금희의 오월〉 등 여성 희생자들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계엄군의 과시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의 가장 잔혹한 희생자는 손옥○였다. 당시 만19세의 나이로 S여고를 졸업하고 취업대기 중이었던 손옥○는 5월 19일 친구동생을 문병하러 전남대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수여일 후에야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왼쪽 젖가슴이 잘리고 전신에 대검으로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70센티 박달나무 진압봉으로 두들겨 맞아 온 몸이 두부처럼 짓이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우측 가슴, 턱, 골반, 대퇴부 등 여러 곳에는 수십 발의 총탄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5월의 노래의 가사는 그녀에 대한 국가폭력의 성적 침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국가폭력의 희생은 그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시신을 안치한 망월동 묘지 앞에서 실신한 이후 1년여 만에 세상을 떴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죽음의 충격으로 중풍에 걸려 6년여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¹⁷⁾

이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영희,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제2호, 2018.

가. 사망자

5·18민주유공자 유족회가 2005년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5·18관련 사망자는 총 606명에 이른다. 항쟁 당시에 숨진 이들로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의 통계는 2019년 현재 165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신원이 밝혀진 여성 사망자의 숫자는 14명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 여성사망자는 남성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숫자보다 훨씬 많을 지도 모른다. 남성사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방 불명자나 암매장 된 사람들이 많아 실제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타박상(이요○)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총상이며 총상에 자상이 겹쳐진 경우(손옥○)도 있다. 이들 가운데 21일 집단발포 이전에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그것으로 사망하게 된 이요○과 사망시간과 장소가 모두 불분명한 손옥○(자상과 다발성 총상이 겹쳐 무참하게 학살됨)를 제외하면 항쟁 당시에 죽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21일 이후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여성 사망자들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과 사망일시는 아래의 <표 1>에 나타나 있다.

항쟁 당시에 사망한 여성들 중 공식적으로 신원이 밝혀진 여성 사망자는 위의 <표 1>에 나타난 14명 정도이다. 최미○는 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으로 21일 오후 집 앞 골목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공수부대원이 정조준한 총을 맞고 그 자리서 사망했다. 실업계 여고인 C여상 3학년이었던 박금○(당시 17세)는 21일 오후 기독교병

17) 당시 병원에 사무직으로 일하던 손옥○의 남동생 또한 일요일이었던 18일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끌려가 대검에 찔리고 구타를 당했다. 그는 그 때의 피해의 경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안진, “5·18 광주항쟁에서의 여성의 피해, 그리고 생존”, 『여성과 평화』, 제4집, 2005, 247면.

〈표 1〉 여성 사망자(총 14명)

성명	직업	사망일시	사인
최미○	주부	5.21.13:05	두부관통 총상
박금○	여고생	5.21.14:00	배흉부 총상
이성○	가사	5.21.14:00	흉부 관통상
손옥○	입사대기	5.22(추정)	흉배부좌골 관통총상, 좌흉부 자상
박현○	여고생	5.23.09:00 ¹⁸⁾	하복부 총상
고영○	회사원	5.23.09:00	전흉부 다발성 총상
김춘○	회사원	5.23.09:00	전신 다발성 총상
이매○	농업	5.22.18:00	두부 다발성 총상(유탄)
오정○	주부	5.23(추정)	두부관통상(M16 유탄)
김오○	주부	5.22.09:00	시위대차량에 두개골 파열
박연○	농업	5.24.13:20	복부, 회음부 관통상
신서○	연탄배달	5. 22	후두부 관통상
김명○	여중생	5.27.21:40	치골맹관 총상
이요○	여고생	5.21.	무차별 구타(귀가 후 사망)

18) 1996년 검찰수사에 의해 박현○은 고영○, 김춘○와 동일한 차량에 탑승했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에서 출간한 「광주민중항쟁 비망록」(이하 「비망록」으로 약함)에도 23일 오전에 화순방향으로 관을 구하러 나갔던 시민군 차량에 여고생 박현○, 홍금숙이 일신방직 여성노동자 김춘○, 고영○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고생 박현○, 홍금숙이 탔던 차량과 여성노동자 김춘○, 고영○가 탔던 차량은 전혀 다른 별개의 차량일 가능성이 크며,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이 차량 안에서 대학생으로 보였었던 여성 두 사람은 암매장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충격 사건이 몇 건이건 간에, 오후에 18명이 탄 차량의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의 증언대로 그녀와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주남마을 앞에서 계엄군의 충격으로 박현○이 사망한 시간은 23일 오전이 아니고 오후일 가능성이 크다.

원에서 헌혈을 하고 돌아오다 공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실업계 여고인 S여상 3학년으로 80년 7월 은행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박현○은 21일부터 도청에서 일을 돕다가 23일 오후 부족한 관을 구하러 시민군들과 함께 미니버스(18명이 타고 있었던 소형버스에 대한 주남마을 학살 사건)를 타고 화순방향으로 가던 중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일신방직 방직과 여사원이었던 김춘○(당시 18세)와 고영○(당시 22세, 어머니도 4년 후 사망)¹⁹⁾은 시민군 9명이 탄 순찰차를 함께 타고 가다 주남마을 근처에 주둔한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11명 모두 현장에서 몰살되면서 사망하였다.

S여고 2년생인 이요○(18세)은 계엄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후 간신히 귀가했으나 21일 극심한 타박상으로 사망하였다.²⁰⁾ 김명○은 14세의 여중생으로 29일 저녁 9시경에 친구 집으로 참고서를 빌리러 나갔다가 계엄군의 수하에 붙음했다고 피격을 당해 사망했다. 당시 15세인 이성○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포목상을 하던 양 부모를 돕고 살던 중 동네사람들과 시내 시위구경을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21일 이른 오후 동구청 뒤에서 공수부대의 총탄에 사망하였다.²¹⁾ 사망시기가 불분명한 손옥○은 S여고를 졸업하고 취직된

19)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편), 「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도서출판 남풍, 1989, 232면, 274면. 시민군 9명과 여성노동자 2명이 탄 차량의 여성이 누구였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주남마을에 사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시간이 오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총격이 오후에 발생하였던 18명 탑승차량과 다른 차량임은 분명하다.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23일 주남마을 총격을 한 건으로 마무리 지었던 김철수사의 오류를 밝히고, 목격자와 생존자의 진술대로 최소한 두 건 이상의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주남마을 학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 오월 여성연구회, 1991, 242면.

21) 위의 책, 236면.

회사에 첫 출근날짜를 기다리던 중 19일 친구동생을 병문안하러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6월 7일경에야 가족들이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확인하러 간 손옥○의 시신은 처참했다. 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한으로 그녀가 세상을 뜬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부모들은 5·18희생자의 명단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그들 또한 간접적인 5·18희생자인 것이다. 당시 68세였던 이매○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손주들을 돌보던 중 22일 이른 저녁 쌍촌동 자택으로 날아든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 송암동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박연○은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시 외곽에 주둔 중이었던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그의 남편과 큰 아들도 그녀가 사망한 후 3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²²⁾ 오정○(53세)은 23일 자택으로 날아든 유탄으로 두부 관통상을 입고 23일 사망했다.²³⁾ 연탄배달원인 신서○(38세)은 교도소 부근 우산동 서방사거리서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²⁴⁾ 김오○(57세)은 22일 아침 집안일로 시내에 나갔다가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부근인 무등파크맨션 옆 도로에서 시위차량에 치여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다.²⁵⁾

〈표 1〉에 나타난 5·18 항쟁 당시의 사망자들 외에도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총상으로 죽자 충격으로 다음해 10월 16일에 사망한 어머니 박난○(42세), 총상 후 얼마동안 앓다가 사망한 박귀○(49세), 폭행을 당한 후 정신이상과 후유증으로 1987년 10월 16일 사망한 전남대학생 1학년 장경○ 등등 더 많은 사망자들이 있다.²⁶⁾ 더구나 도처에서 즉결처분과 암매장이 이루어져 무연고로 암매장된 여

22) 위의 책, 241면.

23) 위의 책, 242면.

24) 위의 책, 242면.

25) 위의 책, 237면.

26) 오월여성연구회, 1991, 242면.

성들도 있을 것이다. 1991년 현재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신고가 남녀 총 102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암매장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연행자, 구속자

항쟁지도부와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도 불구하고 5·18항쟁은 결국 27일 새벽 5시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이후 광주전역에는 검거선봉이 몰아닥쳤다. 여성구속자로는 5월 17일 밤 예비검속으로 잡혀간 최초의 구속자 류소영(조선대 약대 3학년)²⁷⁾, 항쟁도중에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었던 전춘심, 차명숙, 그리고 23일 주남마을 학살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여 치료를 받으며 구속되어 있었던 홍금숙 등 4명이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5월 27일 이전에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 진압 직후에는 녹두서점의 주인인 정현애²⁸⁾,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조아라(당시YWCA 회장),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여성들이 구속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5·18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계속 연행되고 구속되었는데, 한 때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수사를 받는 여성들이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⁹⁾ 이들은 수사과정에서의 갖은

27) 류소영은 반공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로 인해 연좌제로 예비검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 수사당국에 의해 남편이 5월 17일 이른 밤에 예비검속으로 불법 체포된 이후 계엄군 진주 초기부터 항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정현애에 의하면, 28일 아침 상무대 영창마당에 끌려나왔을 때 비로소 끌려온 여성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5월 27일 아침 도청 진압현장에서 잡혀온 여성들은 계엄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새벽 2시경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 도청에서 민원실, 상황실 활동을 하면서 취사, 부상자 간호 등을 하였던 이경희, 어린 여중생인 김미숙, 27일 새벽 아들 김태종을 찾으러 나왔다가 체포된 최남심, 김순희 등 다섯 명이다. 정현애 외, 「녹두서점의 오일」, 한겨레출판, 2019, 263면.

29) 연행된 여성들 중에는 시위에 참여한 여학생들 외에도, 시민군에게 김밥을 나누어준 아주머니, 수배자, 도망자를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끌려온 여성들이 있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활동이 조직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버티면서 다른 연루자들이 당할 피해를 줄이려고 혼신을 다했다. 송백회의 주요멤버였던 정현애는 녹두서점, YWCA 빌딩 안에서 이루어진 송백회의 활동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검거확대를 막았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검거망을 피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항쟁기간 동안 이들이 벌인 활동들은 수사 기록이나 쓰여진 역사의 기록에서 감추어져버렸다.

(1) 도청진압 이전에 잡혀온 여성들

27일 도청 진압 후, 끌려간 여성들은 상무대 영창을 거쳐, 31일 저녁식사를 마친 후 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감되었다. 당시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중 여성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비 검속된 사람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류소영은 끌려가자마자 ‘이 빨갱이년!’이라는 욕설과 폭행을 당하며 국가폭력의 위협을 심하게 느꼈으나 얼마 후 폭력의 강도가 느슨해졌는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패퇴하여 축출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⁰⁾

가두방송 중에 간첩으로 몰려 끌려온 전옥주, 차명숙은 항쟁 초기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빨갱이 공포증을 이용한 수사기관의 프락치들의 선동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고 도청이 진압되기 전에 수사당국에 끌려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항쟁

었다. 강진에서 잡혀온 한 여성은 ‘광주에서 군인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더라.’고 말했다가 ‘유언비어’죄로 잡혀오기도 했다고 한다. 정현애 외,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2019, 267면.

30) 류소영 구술자료, 2019. 6.8 참조.

진압 이전에 끌려온 4명의 여성 중 나머지 한 명인 홍금숙은 주남 마을 학살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여 구속 상태에서 총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홍금숙은 오빠들을 찾으러 나왔다가 도청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23일에는 헌혈홍보를 하고 부족한 관을 구하기 위해 도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다른 여고생 박현⁰과 광주외곽인 화순 쪽으로 나가는 시민군 순찰차(총 18명 탑승)를 타고 나갔다가 지원동 주남마을 주변에서 변을 당한 것이다.

(2) 도청 진압 이후에 잡혀온 여성들

27일 도청과 녹두서점에서 끌려간 여성들이 31일 저녁이후 광산 경찰서로 넘겨진 이후에도 여성들이 계속 잡혀들어 왔으며 1주일 정도 지나자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온 여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유치장 다섯 개의 방에 가득 찼다.³¹⁾ 6-7명이 수감되는 방에 20명씩 몰아넣어 한 때 100여명의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³²⁾ 이들 중에는 아방궁이라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로 상무관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던 시체를 염하는 일들을 도맡았던 여성들도 끌려왔다. 이들에게 수사관들은 ‘폭도고무죄’라는 죄목을 붙였다고 한다.³³⁾

여성들이 체포되어온 이유는 다양했다. 시체를 염해준 일이 ‘폭도고무죄’가 되었듯이 시위에 참여한 여학생 등, 도청 상황실과 민원실 일을 도왔던 여성들, 도청과 근처 YWCA 빌딩에서 취사를 도왔던 여성들, 시민군에게 김밥을 나누어준 아주머니, 수배자를 숨겨주다가 끌려온 여성들, ‘광주에서 군인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더

31) 정현애, 앞의 책, 266면.

32) 정현애, 앞의 책, 266-267면.

33) 정현애, 앞의 책, 267면.

라.’고 말해 강진에서 끌려온 여성 등등 참으로 다양했다. YWCA에서 취사를 돕다가 5월 26일 밤에 도피했으나 남아 있던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날이 밝자 27일 새벽에 다시 YWCA로 돌아와서 잡힌 여성도 있다. 이남○은 27일 새벽 YWCA로 돌아와 총상을 입은 시민군을 옮기다가 자신도 총알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해 체포되어 왔고, 체포된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 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왔다.³⁴⁾ 6월 초 중순경에 경찰서로 체포되어온 여성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항쟁 진압이후 무차별적인 검거열풍으로 끌려온 여성들도 많았다. YWCA에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YWCA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는 연행 초기에는 보안대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광산경찰서로 보내졌다.

6월 말의 1차 훈방조치와 7월경의 2차 훈방조치로 다수의 여성들이 석방되었다. 유치장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았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훈방조치 후 유치장에 남은 여성들은 10여명이었다. YWCA에서 활동한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 예비검속으로 맨 먼저 끌려온 류소영, 시민신고로 간첩혐의로 잡혀온 전춘심과 차명숙, 27일 새벽 방송을 한 박영순, 도청에서 활동을 했던 이경희, 도청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체포되어 온 김선옥, YWCA간사 정유아 등 10여명이 남게 되었다.³⁵⁾

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은 4시 10분경 진압군의 도청에 대한 끔찍한 총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지만, 날이 새자 도청에서 체포 연행되어 수사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34) 이남○은 석방된 후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했고, 전옥주와 마찬가지로 고문 후유증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현애, 앞의 책, 267면.

35) 정현애, 앞의 책, 272면.

석방된 이후에도 마치 빨갱이처럼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본명을 속이고 거의 30여 년 동안 박수현이라는 가명으로 살았다. 박영순은 석방된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광주를 떠나 타지인 경남 진해에 정착하였고 결혼도 하였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까지 고초를 겪어야 했다.³⁶⁾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방송 구절은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항쟁지도부가 메모해서 건네준 마지막 방송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진술서에 수백 번 썼다는 박영순은 40년 이후의 서사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소환하였다. 그녀가 수사과정에서 겪은 것들 중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여자가 왜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느냐’는 추궁이었다고 한다.³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쟁 도중이나 직후에 끌려온 사람들 말고도, 수사당국이 계엄군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간첩죄나 내란죄로 조작하려는 과정에서 뒤늦게 연행되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 중 한 사람은 취사 등 도청 활동에 참여했던 이정희이다. H 전기 여성노조위원장이자 JOC 회원으로 도청에서 활동을 하였던 이정희는 광주항쟁이 진압된 이후 6월 5일 경에 보안사에 불법 연행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지하로 저를 끌고 가더니... 워커발로 막차고 등, 허리 등을 무조건 때리고... 이유나 알고 맞자고 하니...너, 가루로 만들어서 하수구애다 흘려보내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없고, 쥐도 새도 모른다. 쓰욕은 다반사고, 조서를 끝내고도 잠을 안재워요...조서

36) 결혼 후에도 늘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고 살아야 했던 박영순의 남편은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공무원의 길을 포기해야 했고, 직장생활에서도 승진의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 박영순의 구술자료. 2018. 2. 7.

37) sbs, “그녀의 이름은”, sbs 스페셜, 2020. 5. 17.

를 ‘김대중 내란음모죄’로 끌고 가는데…가루가 돼서 흘러갈망정 내가 한 건 했다하고 안한건 안했다 할란다 그랬더니 ‘이 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몫 해먹을 년이구나’ 하면서 또….”³⁸⁾

이정희가 끝까지 버티자 나가서 ‘이걸 인정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라’고 했고, 결국 그녀는 보안사 지하실서 5일을 보낸 후에 사표를 쓰고 나오기로 동의했다. 협박은 그녀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니가 사표를 안쓰면 당시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오빠까지도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가족들한테까지 협박이 들어왔으므로 사직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³⁹⁾ 사직에 동의를 한 후에도 그녀는 다시 서부경찰서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시 5일 간 구금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석방되었으나 회사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강제사직을 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광주항쟁 이전인 1977년경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회사에서 ‘저 빨갱이 같은 년’이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노조 조합원 교육을 진행해야했던 그녀는 5·18항쟁 이후에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어 어디에도 취업을 할 수 없었다.

다. 부상자

공식적으로 신원이 밝혀진 여성 부상자는 21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상을 입고 개인적으로 도피하여 치료한 경우⁴⁰⁾를 비롯하여

38)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 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130-131면.

39) 앞의 책, 134쪽.

40) 아래에서 예로 든 강분희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1991)에는 홍금숙을 비롯한 부상자 11명을 포함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심각한 3명의 증언이 들어 있다. 이들의 증언 속에는 국가폭력을 당한 경위와 부상의 원인, 부상 이후의 치료와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 등이 자세히

폭력적 공격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이상과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PTSD)을 앓고 있는 경우⁴¹⁾,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은 공식적인 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들의 부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20일까지는 주로 곤봉으로 인한 타박상이나 대검에 의한 자상, 성폭력 등이 지배적이며,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 1시 이후에는 총상으로 인한 것이 많다.

5·18 연행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PTSD)도 공식적인 부상자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부상’이란 용어는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야 인정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나 연행·구속과 수사과정에서 겪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정신적인 외상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신체적 부상자 중의 대표적인 사례들인 이추○, 강해○, 최복○, 홍○의 네 경우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이추○

부상당한 임신부였던 이추○는 유탄에 총상을 입고도 폭도로 몰려 매질을 당했다.

5. 22일 임신 3개월인 이추○는 자택 2층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서술되어 있다.

41) 임지○(9세)의 경우는 팔꿈치에 총을 맞았는데, 이를 본 언니는 이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신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임지○의 언니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자는 공식적인 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임선화,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국가폭력: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20.

충을 맞고 쓰러져 육군통합병원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23년이 지난 후에도 “이 때 들은 욕이 얼마나 끔찍하고 치욕스러운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처질 정도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른다.”⁴²⁾고 말하고 있다.

“...사복 형사가 와 ‘앉아, 이년’하는 소리와 함께 느닷없이 두꺼운 각목으로 머리며, 어깨, 다리 등을 때렸다. ...임신 중이라고 사정했더니 구두 발로 배를 걷어차며 거짓말한다고 계속 때렸다. ‘요년이 YWCA 에서 밥을 해주고 데모를 했다. ...온 몸뚱아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조그만 입을 벌려도 죽이겠다.’는 욕설을 퍼부으며 때렸고...”⁴³⁾

부상된 채 체포되어간 이추○는 죽을 정도의 심한 구타와 임신 중 계속되는 하혈로 고통을 받다가 임신 5개월 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의사들은 기형아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행히 극심한 걱정 속에서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들이었으면 그런 고생 속에서 죽었을텐데 딸이니까, 천하게 살았다’는 주변의 말들에 오히려 안정되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어른들이 글잖아, 딸이라 살았다. 아들이었으면 바로 죽여 부렸을 것인데 딸이라 살았다. ...한 5개월을 시달리다가 낳고 보니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안정이 안되는거야...”⁴⁴⁾

42) 오월여성회, 「오월여성의 이야기들」, 광주광역시, 2003, 193면.

43)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245면.

44)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여성, 주제, 삶」, 도서출판 티엘씨, 2000, 97면.

(2) 강해○

6남매의 어머니이자 평범한 주부였던 강해○은 화순에 있는 집으로 자녀들을 피난을 시키려고 두 아들, 딸과 함께 22일 화순 쪽으로 걸어가는 중에 지원동 부근에서 총격을 당해 실명하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린 외손녀가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남편은 실명해버린 아내를 돌보랴 가족의 생계를 꾸리랴 무리를 하여 그녀가 실명한지 3년도 못되어 신경성 혈압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말로는 다하지 못한다. 그 동안 흘린 눈물의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까....”⁴⁵⁾

(3) 최복○

국군통합병원 맞은편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최복○은 5. 22일 가게를 문닫고 집에서 쉬는 동안 자택으로 날아온 유탄으로 부상을 입었다. 최복○은 부상을 입었던 당시 수술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왼쪽 귀는 들리지 않았고 입이 오른쪽으로 비뚤어졌다. 그녀는 평생 동안 부상의 후유증을 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⁴⁶⁾ 최복○은 “6·25 때도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진 않았지.”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피해를 서술했다.⁴⁷⁾

(4) 홍○

홍○은 5월 27일 아침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유동에 있는 시댁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 총알이 골을 관통하

45) 오월여성회, 「오월여성의 이야기들」, 광주광역시, 2003, 66-71면.

46)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91, 248면.

47)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247면.

여 수술을 2회나 하였으나 온몸이 마비되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수면제나 정신과약을 먹어야 잠을 이룰 수가 있다.⁴⁸⁾ 재수술을 받았으나 총상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생활형편이 말이 없게 되자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나서 주점에서 일하기도 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나다니는 그녀를 시가 구성원들은 냉대했다. 국회청문회에 나갔던 증언자 한 명이 그녀의 이야기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친 오빠조차 ‘가정주부가 살림이나 할 것이지 그런데 나와서 어찌겠다는 것이냐?’ 고 시외전화까지 하며 난리를 쳤다. 그녀는 “싸울 수가 없어 참았지만 화를 삭일 수가 없었다. 친형제기간에도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그렇게도 몰라주는데 하물며 다른 누가 알아주겠는가? 사망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부상자는 사망자의 유족하고는 또 다르다. 부상자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⁹⁾

라. 남겨진 가족들과 생존하기

(1) 김옥○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더라도, 남편이나 자식, 형제의 사망 혹은 부상으로, 살아남은 가족의 생존을 꾸리며 고통을 겪고 살아온 여성들도 많다. 한국전쟁 이후와 마찬가지로 사망, 부상, 구속 등으로 무너져버린 가족의 생존은 고스란히 살아남은 여성의 몫으로 남겨지며, 그러한 경우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연구에서는 남편이 공수부대의 진압봉에 의해 사망해버린 김옥○와 중학생 아들의 부상으로 가족의 생존을 이끌어가야 했던 정

48) 오월여성회, 「오월여성의 이야기들」, 광주광역시, 2003, 98-99면.

49)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278면.

덕○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 정문근처에서 살았던 김옥○는 5월 21일 점심 무렵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친 공수부대의 진압봉에 맞고 전남대 안으로 끌려간 남편의 죽음으로 당시 41세로 6남매를 기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망 10여년 이후 처음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빛을 지며 생계를 꾸리느라 고통이 컸다.⁵⁰⁾

“...정부가 잘못해서 민간인을 죽였다. 내 남편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재산이 없어 바치는 세금이 적었을 뿐이다. 나라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죽음뿐이었다. 어디 가서 이것을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미망인들은 너무 억울하다.”⁵¹⁾

(2) 정덕○

1남 2녀의 어머니였던 정덕○은 중1 아들이 시내구경을 나갔다가 광주여고 앞에서 복부와 척추 관통상을 당했다. 그녀는 큰 병원에서 15차례 이상의 수술을 받고도 거동이 불편하게 된 아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며 지켜보며 살고 있다. 그녀의 고통은 부상당한 자식과 생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5·18관련 자라는 낙인 때문에 남편의 사회생활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아들 간호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직장에서 산골짜기로 발령을 내버렸다. 당시에는 5·18관련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았던 시절이고, 또 간첩으로까지 내몰리던 시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당연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

50) 오월여성회, 「오월여성의 이야기들」, 광주광역시, 2003, 102면.

51) 오월여성회, 앞의 책, 106면.

지 못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다 ... 커가는 자식들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그 뒤로 안 해 본 것이 없이 다 해 보았다.”⁵²⁾

Ⅲ. 성폭력 진상규명을 위해

1. 구술증언에 의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가. 과시적인 성적 침탈

항쟁기간을 전후해서 발생한 성폭력은 한국사회에서 MeToo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국면에서 2018년 5월 10일 K씨가 수사관에게서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⁵³⁾ 5·18항쟁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은 5월항쟁을 영화로 만든 ‘꽃잎’이라는 작품에서 1996년 처음으로 다루어졌지만 MeToo 운동 이전에 실제 피해여성이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우는 없었다. 항쟁이후 10여년이 넘도록 구속자이든 유가족이든 부상자이든 피해자를 폭도나 빨갱이 취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5·18 피해사실을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항쟁을 지지하거나 가담한

52) 오월여성회, 앞의 책, 108면.

53) 정대하, “충격적인 5·18성폭행, 진실 밝혀 단죄해야”, 한겨레 신문 2018. 5. 9일자; “5월의 폭력에 여성들은 왜 말하지 못했나?” 한겨레 신문 2018. 5. 10일자 참조. 당시 전대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던 K양은 도청에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안내방송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교생실습을 하다가 계엄사 수사관들에게 잡혀와 65일간 구금되어 폭행과 고문을 받다가 석방 하루 전날 계장이라 불리는 수사관에게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아버지는 교직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세상을 등지는 등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다. K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통째로 잃어버린 인생’으로 표현한다.

행위에 대해 가족들조차도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여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기는 커녕 일반 피해조차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5·18항쟁에서 성폭력은 5월의 노래가사 중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소설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당시 계엄군들은 시내 진주 초기부터 M16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에 장착한 대검과 곤봉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에 사망자들의 사인에는 단순한 총상이 아니라 대검으로 찌른 자상이나 곤봉으로 구타한 타박상이 병합된 경우가 많았다. 계엄군이 여성의 유방을 도려내었다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 목격자⁵⁴⁾가 시내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⁵⁵⁾ 앞에서 가슴이 피범벅이 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후 분노하여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가두방송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당시 여성에 대한 성적 침탈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특히 민감했고, 그것을 북에서 납파된 간첩이 퍼뜨린 유언비어로 매도하면서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를 시민들을 선동하여 간첩으로 몰아 체포했다.⁵⁶⁾

54) 19일 저녁부터 가두방송을 시작하여 초기항쟁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던 전옥○를 말한다. 전옥○는 가두방송을 다니면서 가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던 여성의 시신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153면.

55) 전옥○는 항쟁 초기에 시가지 가두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여러 구의 처참한 시신들을 발견하였는데 ‘블라우스를 입은 가슴이 난자된 여학생의 시신’을 본 장소가 일고 앞인지, 광고 앞인지는 불분명하다. 어느 학교이든 비교적 도심인 도청에 가까운 위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197면;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2012,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153면.

56) 전옥○는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며 수사를 받는 중에 시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간첩으로 지목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2012, 155면.

‘유방이 잘려 나갔다.’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쉽게 유포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시내에 진주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과시적인 성폭력과 공격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항쟁 초기에 나타난 과시적인 계엄군의 성적 침탈은 당시 여고 2학년이었던 여학생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도 나타나 있다.

“5월 19일 스쿨버스가 교대 앞을 지나치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차를 세우더니 차에 올라탔다. 서너 명의 공수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곤봉까지 찬 채, 우리들의 고개를 곤봉으로 치켜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복을 곤봉으로 제치고 가슴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러다 당하지나 않을까 싶어 숨이 막혔다. …다음 날부터는 동네 아줌마들이 시위대들에게 밥을 해준다고 집집마다 쌀을 걷었다. 밥을 하고 김치를 담아서 시위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 갖다 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키가 커서 시위대에게 그런 것들을 올려주었다. 내가 본 시위대 차량만도 수십 대였다. 나도 남자라면 그 차에 탔을 것이다.”⁵⁷⁾

시내에 진주했던 공수부대의 과시적인 폭력과 성적 침탈은 시위에 참여했던 아래와 같은 한 여학생의 증언에서도 엿보인다.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 앞 시위부터 참여했던 강분희는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위에 참여하였고 20일 밤,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그녀는 양심적인 공수부대원을 만난 덕분에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었다. …나도

57)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173-174면. 당시 S여고 2학년 이었던 표강님의 증언 참조.

같이 노래를 부르며 노동청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돌격’하는 소리가 들려 뛰려는 순간 눈 앞에서 불이 번쩍했다. …대여섯 명의 공수가 달려들어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온갖 욕지거리를 해댔다.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하는 신음소리가 나오자, 그 중 한 놈이 ‘이 쌍년아, 엄마 좋아하네, 가시내가 데모를 해? 저년 대학생 같은데 죽여 버려’하니깐 여러 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그만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내가 처치하겠어’하면서 끌고가 도로가에 무릎을 꿇게 하고서 머리를 땅에 처박았다. 대여섯 명의 어린 학생들이 나처럼 나가 쓰러져 있었고 몇 놈은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 뛰어간 사이, 칼을 뽑아든 공수가 다시 ‘이리 와’하면서 나를 끌고 그 옆 불탄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도 너만한 여동생이 있다. 여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했다. …혼이 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고 있으니까 그는 나를 구석지로 밀어 넣고 가버렸다. …내가 시내의 적십자 병원에 있는 동안 도청 앞에서 날마다 군중집회가 있었고 죽은 시체가 즐비했다.”

‘유방이 잘려나갔다.’는 소문은 계엄군들 사이에서나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계엄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포와 분노를 자아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수부대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탈은 항쟁 초기에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가 희생된 여성의 신체를 목격한 데서도 나타나며, 화순방향 지원동 주남마을 미니버스 학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주남마을 미니버스의 생존여성인 홍금숙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계엄군들이 실제로 성적 침탈을 내포하는 협박으로 여성들을 대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홍금숙의 증언⁵⁸⁾에 의하면, 18명이 탑승했던 버스에 총탄이 쏟아

져 1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2명의 청년과 경상을 입은 홍금숙 등 3명은 경운기에 실려 산속으로 끌려갔다. 홍금숙이 다른 생포자 2명과 함께 끌려가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너도 유방이 찢리고 싶냐?”고 위협했다고 한다. 홍금숙은 2020년 증언에서도 공수부대원이 ‘어디로 가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대검을 들이대며, ‘너도 유방이 찢리고 싶냐’라며 협박을 했던 기억을 다시 불러내었다.⁵⁹⁾ 40년이 지난 후에도 항쟁에 대한 그녀의 서사에서 성적침탈을 상징하는 협박의 언어가 생애서사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계엄군들이 진주 초기부터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들의 여성들에 대한 성적 침탈로 남성들을 제압하고 공포를 증폭시키는 기제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18항쟁에서 4·3사건에서처럼 마치 전시성폭력과 유사한 성폭력이 자행된 것은 그것이 비록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시상황에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가해집단의 심리적 기전이라고 해석할지라도 군의 기강을 유지해야할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피해는 계엄군의 의도와 달리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굴종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분노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들의 항거는 천인공노할 만행에 저항함으로써 자신이 인간임을 주장하는 일종의 인정투쟁

58) 홍금숙은 5월 23일 오후에 발생한 화순방향 주남마을 앞 ‘미니버스 총격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1988. 12. 7일 국회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였다.

59) 두 오빠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공수부대의 집단학살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 홍금숙은 국회 청문회(1988. 12.7)에서 국회의원들이 던진 질문행태는 5·18항쟁 당시 군 당국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항쟁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홍금숙은 한 의원이 “증인, 결혼했습니까?”라고 묻고, 홍금숙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경상도 남자와 결혼하라.”는 식의 권유 아닌 권유를 공개적으로 받았던 것을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다. sbs, “그녀의 이름은”, sbs 스페셜, 2020. 5. 17. 홍금숙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이었다. 여성들이 겪은 피해는 그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항쟁초기에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는 데는 여성들의 가두방송과 선전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여성들에 대한 유별나게 잔혹했던 학살은 역으로 공동체적 결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쟁초기에 차량시위로 가두방송을 했던 한 여성은 무참하게 학살당한 한 여성의 주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저항을 고무시켰다. 계엄군이 저항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시민공동체의 성원인 여성을 표적으로 하여 과시적인 폭력을 행사할 때도 여성들은 타자화된 존재였지만, 저항의 서사에서도 여성들은 남성시민들이 지켜주어야 할 타자화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가해의 서사에서나 저항의 서사에서나 이중으로 타자화된 여성의 모습은 가부장제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금남로에 접어드니 공수들은 붙잡힌 학생과 시민들을 개처럼 두들겨 패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시가지로 누비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방송을 했다. …‘계엄군 아저씨,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광주 시민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동생,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형제들이 무자비한 계엄군에 끌려서 죽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2시에는 픽업차에서 버스로 옮겨 탔다. 그 때부터는 상황방송을 했다. 오전에 Y고 앞에서 가슴이 난자된 채 대검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의 시체를 본 나는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계엄군이 여학생 유방을 난도질했다는 말은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 내 차 뒤에는 항상 시위대가 따라다녔다.”⁶⁰⁾

60)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나. 계엄군 진주 초기의 성폭행

앞에서 언급했던 Y양은 당시 광주에 소재한 K여고 1학년으로 5월 19일 광주 근교에 위치한 남평 집까지 걸어오다가 군인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그녀는 불안, 공포 증세를 보이다가 혼자서 웃어대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동네사람들에게 욕설을 해대고 혼자 중얼거리면 잠도 잘 자지 못했다. 그 후 언론매체에서 그녀를 자꾸 찾아온 다음부터는 더욱 정신상태가 불안정해져 한 때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1981년 무렵에는 M복지원에 수용되기도 했다가 1987년경에는 나주 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기도 했다.⁶¹⁾ Y양이 받은 충격은 정신병원의 입원치료에도 치유가 되지 않았고 결국 속세를 등지고 승려가 되었다. Y양의 오빠는 ‘동생과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며 국회 5·18 청문회의 증인을 통해 사실을 공개하려 했지만 관련단체 사람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⁶²⁾

다. 수사기관의 성폭력

전옥○(본명 전춘○)⁶³⁾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들이 자행한 고문과 성폭력의 고통을 가장 심하게 겪었던 여성이다. 19일 밤 11시 경에 도청부근의 장소에서 약속이 있었던 그녀는 밤 9시경 송정역에 도착한 이후 집에 들렀다가 금남로에 나갔다. 그녀는 그 곳에서 군

194, 195, 197면.

61) 앞의 책, 275면.

62) 한겨레 신문, 2018.5.9.일자.

63) 전옥○의 호적상의 이름은 전춘○이었지만, 20일 아침 도청 도지사와의 협상에서 학생들 석방과 계엄군 퇴출을 주장하면서 도지사가 이름을 물을 때, 호적상의 이름인 춘○이라는 이름 대신 예명인 옥○라는 이름을 대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247면.

인들이 노상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몇 사람들과 스피커와 앰프를 구해와 방송을 시작했다. 19일 밤 11시경 도청 앞에서 픽업차를 타고 방송을 시작하여 2시간 후에는 버스에 갈아타고 신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을 했다. 전옥○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가 방송한 가두방송의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우리 민간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잠에서 빨리 깨어나 도청으로 모읍시다.”

“사랑하는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도청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역부근에서 시신 두 구를 발견하여 리어카에 싣고 다니며 한 방송),

“사랑하는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가슴을 난자해 죽였습니다.”⁶⁴⁾

(가슴부분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이후의 방송)

전옥○의 활동은 계엄군을 축출한 이후로는 헌혈을 호소하고 시신을 직접 수습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옥○은 도청이 진압되기 전에 선무공작원(혹은 수사기관의 프락치)⁶⁵⁾으로 보이는 남성의 선동에 의해 시민들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고,

64) 전옥○는 피투성이가 돼서 볼 수가 없어서 ‘난자를 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내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서술했다. 30여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서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유언비어’로 몰고 갔던 억울함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2012, 145, 146, 153면 참조.

65) 오월여성연구회, 1991, 98면 참조. 독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남성은 도청에서 505보안대의 첩자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시민군으로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김상집은 27일 도청 진압 후 보안대로 끌려가 수사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505 보안대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조사받는 사람들의 행적을 확인해주고 다니는 장계○을 만났다고 한다. 정현에 외,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2019, 312-313에 실린 김상집의 증언 참조.

결국 수사기관으로 잡혀갔다. 그녀를 간첩으로 몰았던 남성은 ‘저 여자는 교육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고는 여자가 저렇게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저 여자가 독침으로 쏘셨다.’라고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한다. 전옥○는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수사기관으로 끌려가자마자 새벽 2시까지 고문을 받았고, 총개머리 판으로 찍어내려 피범벅이 되자 육군통합병원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21부터는 상무대로 보내져서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고문이 10여일 간 계속되었다.

“광주공원에서 맨 처음 간첩으로 몰아 잡혀오게 했던 수사관이 나타나 ‘이 년이 방송한 년이지.’ 그러면서 진짜 야구방망이로 제 허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다시 고문실로 들어와 송곳으로 아홉 군데를 쏜 겁니다. “모란꽃, 이북에서 2년간 교육받고 남파된 간첩인거 다 안다. 이미 너희 오빠가 다 불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무릎을 송곳으로 찔린 건 그래도 살을 쏘시니까. ...제일 아픈 건 볼펜을 손가락에 사이사이에 넣어 가지고 쥐어 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또 심고 어디론가 갔어요. 거기가 바로 광산경찰서입니다. 가니까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경찰관이 옷을 싹 벗겨버리더라고요.”⁶⁶⁾

그러나 그녀가 당한 가장 극심한 고문은 수사과정에서의 물리적 고문이 아니었다. 석방되어 시골 부모 댁에 머물 동안 주변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수군대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진짜 고문은 이때부터’⁶⁷⁾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무작정 상경하여 여러모로 살 길을 찾아보았으나 정보기관과 수사

66)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2012, 156-158면.

67) 앞의 책, 162면.

기관의 감시로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

라. 사망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성적 침해

전시 상황의 성적 침탈은 여성 사망자들의 시신에서도 나타난다. 단순한 총상이나 다발성 총상에 더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과 불필요할 정도의 공격성은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라 성적인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노래가사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손옥○를 비롯하여, 주남마을 학살에서 희생된 박현○, 김춘○, 고영○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1) 손옥○

여성 사망자들 중 손옥○의 부검조서를 보면, 총격 사살의 경우에도 여성을 타자화하여 공격할 때 성적인 침해를 가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공격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위협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손옥○의 검시조서를 보면, 직접적인 사인은 우흉부 관통총상(M16)으로 되어 있으나, 좌유방부 자상에 더하여 좌측 골반부, 대퇴부의 다발성 관통 총상, 하악골, 우측 흉부 총상 등 단순한 확인사살로만을 볼 수 없는 잔혹한 성적 침해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좌측 유방부의 자상은 그것이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사망이전에 발생했던 간에, 맥키논의 표현대로, 남성들에게 국가폭력이 가해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적 침해의 방식을 볼 수 있다. 검시일시와 장소가 5월 28일 상무관으로 명기되어 있는 검시조서는 사망 장소 불상과 함께 사망일시를 5월 22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검시조서만으로는 사망일시를 왜 22일 경으로 추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⁶⁸⁾ 계엄군이 시내 진주 초기에 젊은 청년이면 무

조건 구타하고 연행해갔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만 19세였던 손옥○는 공수부대가 시내에 진출하여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했던 20일이나 21일 경에 끔찍한 가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⁶⁹⁾

(2) 박현○

공수부대가 퇴각한 이후 21일부터 도청 지하실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주로 맡았던 여고생 박현○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입관하여 도청 앞 상무관에 안치할 때, 입관할 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도청 지하실에서 그녀와 함께 일하던 시민군들은 어떻게든 시외로 나가 관을 구해 와야 한다며 시민군 순찰차를 타고 화순방향으로 향했던 것인데 참변을 당한 것이다.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박현○의 사인은 두부, 가슴, 하복부 등 전신 다발성 총상이다. 검안서상의 신체손상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⁷⁰⁾, 좌측 둔부 세군데 관통상, 뒷가슴 맹관총상 등등 계엄군이 시위차량의 ‘적’을 단순히 사살한 것이 아니라 성적 침해를 의도하여 잔혹하게 학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8) 5·18관련사망자 검시조서 순번 54로 되어 있는 손옥○의 검시조서에 사인분류는 M16총상 및 자상으로 되어 있으며, 검시장소인 상무관에서 검시자인 검사1인 외에도 참여인 4인(의사, 군의관, 군검찰관, 경찰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18관련사망자 검시조서 순번 54의 검시내용 참조.

69) 1961년생인 손옥○는 당시 여고를 졸업하고 제약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출근일자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손옥○의 검시조서에는 사망일시를 22일로 추정하고 있지만, 19일 전남대 병원에 입원중인 친구동생 문안을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기 무서워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전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 가족들이 접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으며, 6월7일 경에야 가족들은 광주지검 검사실에 사망자 사진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사체검안서만으로 사망을 확인하였다. 사망 일자를 22일로 추정하고 있는 검시조서와 달리 <비망록>은 5월 21일로 기록하고 있다.

70)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편), 「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도서출판 남풍, 1989, 258면.

손옥○의 시신을 보면, 그녀가 입은 피해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져 여성의 유방이 잘려나갔다는 말로 퍼져나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을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던 당시 계엄군의 주장은 전적으로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아래와 같은 전옥○의 증언은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성적 침탈을 가했던 계엄군의 만행을 은폐하고, 이를 유언비어로 조작하기 위해, 항쟁초기에 가두방송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고 시민들의 저항을 이끌어내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전옥○를 고문하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간첩죄와 함께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내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를 조작하고 덮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음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방송하면서 K고등학교 있는 데로 갔습니다.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내었다는 방송을 저는 하지 않았습시다. 딱 가니까, 봄이랑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 가슴에 피가 한강이 되어 있었어요. ... 그리고 저는 방송으로 ‘사랑하는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가슴을 난자해 죽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난자를 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⁷¹⁾

(3) 김춘○, 고영○

항쟁 초기에 시위에 참여하였던⁷²⁾ 두 여성노동자는 5월 23일 오전에 김춘○의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려고 공장의 기숙사를 나서서 함께 화순에 있는 김춘○의 고향집으로 가려고 화순방향으로 가는 시민군의 차에 탔다가 시 외곽지역을 봉쇄하기 위해 지원동 주남마을을 부근 야산지역에 매복해있었던 공수부대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두 여성은 시 외부와 교통이 끊긴 상태에서 집에 갈 방법

71)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2012, 153면.

72) 일신방직 여성노동자 김정○의 증언 참조. 오월여성연구회, 1991, 163-164면.

이 없어 도청으로 가서 시민군에게 화순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시민군 9명이 탄 차량은 두 여성을 태우고 떠났다. 이 차량이 공수부대 주둔지인 주남마을을 막 지났을 때 계엄군의 총격이 가해졌고 그 자리에서 차에 탄 전원이 사망하였다.

사건 5일 후에 전남대 병원에서 가족들이 확인한 김춘○의 시신에는 가슴에 관통상과 하복부에 수발의 관통상 등 전신에 열한발의 총탄 자국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5년여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몇 일후에서야 부모들이 전남대 병원에서 본 고영○의 시신에도 양쪽 가슴의 유두와 하복부에 집중적으로 총격이 가해져 있었다. 그녀의 시신을 본 어머니 또한 충격으로 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2. 국가의 공식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5·18항쟁에서 여성들은 갖가지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진실규명이 시작된 것은 MeToo 운동이 한창이었던 2018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K양의 폭로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조사단이 꾸려지면서부터였다. 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차원에서, 그것도 여성운동단체의 구술증언조사나 피해자 가족의 호소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진상이 드러났을 뿐이다. 손옥○가 어떻게 그렇게 성적 침해의 방식으로 학살을 당했는지, 여고 1학년학생이었던 Y양이 집단성폭행을 당했던 장소에 주둔했던 부대의 군인들은 누구였는지, 성고문과 성폭행을 자행했던 전옥○와 K양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까지 없다.

2018년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는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성폭력 피해를 다룬 적은 없었다. 다만,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5·18특위’로 약칭함)에서 피해여성들이 증언자로 나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청문회 직후 증언자로 나왔던 여성이 책을 출판하여 수사과정에서 겪었던 성폭력 피해경험을 폭로한 것이 전부였다.⁷³⁾

〈국가기구에 의한 5·18 진상조사〉

(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1988.6월~1989.12월)

(나) 5·18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검찰수사(1995, 1996)

(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5월~2007.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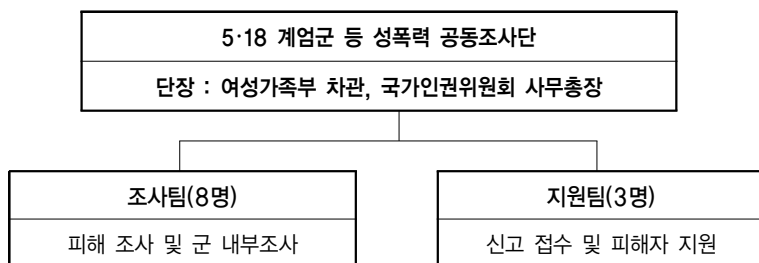
(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2017.9월~2018.2월)

마침내 2018년에 이르러 MeToo운동으로 힘입은 K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의해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5월 8일 항쟁이 진압된 이후 연행되어 60여 일 동안 수사를 받았던 한 여성이 석방전날 수사관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국가는 당시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K양의 폭로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가 공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2018.5.15.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범죄 특별대책단 설치(안)’을

73) 이광영 전춘심 외, 「광주민중항쟁 증언록 :광주여 말하라」, 실천문화사, 1990.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취임초기부터 과거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여 왔던 문재인대통령이 공동조사단을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공표⁷⁴⁾함으로써 항쟁발생 이후 38년 만에 최초로 5·18 항쟁의 성폭력에 대한 국가기구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으로 약칭함)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세 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8. 6.8일 출범하여 4개월여(2018. 6. 8~2018. 10. 31)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⁷⁵⁾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조사팀, 지원팀 등 2개의 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여성가족부에 있는 지원팀은 피해자, 목격자의 피해사례의 접수⁷⁶⁾를 맡았다. 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그림 1〉 공동조사단의 조직

74)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제38주년 기념식(2018.5.18.)에서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발표했다.

75)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철홍, “5·18항쟁과 계엄군 등 여성 성폭력”, 전남대 5·18연구소 집담회 발표자료집, 2019.3.25. 조사단의 조직구성 등은 이 글을 인용하였음.

76) 접수창구는 공동조사단, 서울 중부 및 광주 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 광주 트라우마 센터 등에 두었다.

로 구성된 조사팀은 접수된 피해자(사례)에 대한 면담 및 가해자(또는 부대) 특징을 위한 군 자료 조사, 기관 및 부대 현장조사, 관련 문서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당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조사를 총괄하였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자료 제공·분석 등 담당하였다. 4개월여에 걸친 공동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 조사 자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 특별법’으로 약칭함)에 의해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원회’로 약칭함)가 출범하면 조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동 위원회에 이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조사를 출발하되, 공동조사단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조사대상을 성폭력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5·18항쟁과 관련된 군의 진압, 작전, 수사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공동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면 현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 특별법’으로 약칭함)은 공동조사단이 설정했던 조사대상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조사단이 문헌 자료, 언론 자료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5·18보상 심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이다.⁷⁷⁾

77) 김철홍, “5·18항쟁과 계엄군 등 여성 성폭력”, 전남대 5·18연구소 집담회 발표자료, 2019, 4면, 7면. 조사단은 1~6차 보상심의자료 중 여성신청자 603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경위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상자료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광주광역시에 피해자 보상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시, 장소, 사건 경위 등의 범

국가차원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조사단이 새롭게 피해를 접수한 사례⁷⁸⁾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공동조사단이 다룬 사건은 총 17건에 불과했다. 조사단이 조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 운동 초반(5.19~21)경 대다수 발생했다. 피해 장소는 초반에 광주 시내에서 다수 발생하였지만 외곽지역으로의 군부대의 이동과 외곽 봉쇄작전으로 인해 중후반(5.23~26)에는 발생장소가 외곽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공동조사단에서 조사한 피해여성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직업은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생업종사 등 다양했다.⁷⁹⁾

<표 2> 성폭력 피해여성의 연령 및 피해 발생 장소

연번	연령	직업	피해 일시	피해장소	작전부대(추정)
1	19세	고교생	5.19 16시 이후	백운동 야산	7·11공수
2	28세	생업	5.20 저녁	전남여고 근처	3·7공수
3	31세	주부	5.20 새벽 추정	황금동 인근	3·7공수
4	19세	생업	5.20 점심시간경	가톨릭센터 인근	3·11공수
5	20세	생업	5.20~21 17~19시	쌍촌동 인근	3·7·11공수
6	17세	고교생	5.23 11~12시경	광주교도소 부근	3공수
7	21세	미상	5.26 15시경	상무대 근처	7공수
8	22세	대학생	9.4 낮 시간	상무대 근처	전남합동수사단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2019)결과임.

위에 한정하여 자료 열람을 요청하여,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 보상자료를 열람하였다.

78) 새로 접수된 사례는 총 12건(목적 2건 포함)에 불과한데, 이중 10건에 대해 면담이 진행되었다. 공동조사단은 면담을 진행한 10건에 대해 피해 8건(성폭행 7건, 성추행 1건), 상담종결 2건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앞의 글, 6면.

79) 앞의 글, 5면.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보상과정에서도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피해조사는 물론 보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성폭력 피해와 관련이 없는 상이, 부상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은 사건 직후 우울증, 학업 및 생업 중단, 부부관계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 왔으며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거나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Ⅳ. 성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전시상황과 유사했던 5·18광주항쟁기간 동안에 혹은 항쟁 직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성폭력은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졌든 수사기관에 의해 저질러졌든 간에 국가폭력, 정확하게는 국가폭력기구에 의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시위진압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모욕과 침해를 수반하여 자행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저항에 가담하여 연행된 여성들 가운데는 수사과정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성적 모욕과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성고문까지 당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좀체 피해의 진실을 드러내기 힘든 국가폭력의 성적 침해를 어떻게 좀 더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론적 설명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좀 더 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

에서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에 의해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원회’로 약칭함)가 어떻게 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더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별법의 개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동법의 제정과 시행에 정일 이후에도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조사신청기간을 개정⁸⁰⁾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첫째, 특별법의 조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의 규정에 ‘성폭력범죄’를 추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⁸¹⁾ 지금까지의 전쟁범죄의 재판에서 전시 성폭력을 다룬 적이 없고⁸²⁾ 실정법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심판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5·18항쟁의 과거청산에서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특별법

80) 동 특별법은 2018년 3월 13에 제정되고 2018년 9월 14 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의 구성이 2019년 12월 26일에서야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 제정된 시행령(2018. 9. 11제정, 2018. 9.14 시행) 가운데 진상규명신청기간을 규정한 제23조를 2019년 12월 10일 개정하였다. 이 때 개정시행령 제23조(진상규명 신청)는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추가하려면 현행 특별법 제3조제1호 중 “사건 및”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으로 개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현행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조사과제 6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 5월 11일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사건 7개를 선정하면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포함시켰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 1 : 2020년 상반기』, 2020, 47면.

82) 전시성폭력에 대한 법적 심판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시도하여 젠더 정의를 실현하였던 2000년 법정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실정법에 근거한 재판이라기보다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민간 법정이었다던 러셀법정처럼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에 의한 민간법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법정에서 내려진 ‘히로히토 천황은 유죄’라는 선고는 실정법적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 조사대상 범위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한다면, 1991년부터 ‘정신 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중군위안부의 인권을 위한 운동의 핵심목표인 젠더정의가 5·18항쟁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을 통해 실현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원회’로 약칭함)에 5·18항쟁 당시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전문위원회⁸³⁾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에 전문조사기구의 설치를 규정하는 독립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일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달리 성인지 감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젠더관련 문제와 이슈들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다루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1945년 UN 인권위원회가 출범할 때 여성지위위원회를 별개로 설치하였고, 그 이후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제정 등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인권기구들에서 보편화된 조직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동 특별법의 제정 시에 전시성폭력과 유사한 5·18항쟁 전후의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의 조사대상에서 성폭력을 간과하고, 그것을

83)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라는 이름의 전문조사기구의 설치를 구상 중이며,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동 특별법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확장하고 조사방법과 기구를 보완하는 것 외에도 동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할 조사위원회 내의 전문기구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치명적인 입법의 미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만 일반적 정의의 실현 속에서 젠더정의의 실현이 누락되는 과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전문조사기구의 설치에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조사인력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성폭력 조사 전문기구의 설치와 함께 위원회의 조사인력을 현행 50명에서 최소 7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⁸⁴⁾

셋째, 조사대상에 대한 위의 개정과 함께 조사기간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현행법은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당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해야 한다. 5·18항쟁에서의 국가폭력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폭로한 2018년 K씨의 경우처럼 성폭력은 초기의 저항시위에 대한 무차별 진압과 연행 단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으므로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전후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여성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억압된 경험을 말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피해신고 이후 상담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그것을 토대로 피해구제와 보상⁸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동

84) 현행법 제17조 제1항 중 ‘50명’을 ‘70명’(혹은 ‘100명’)으로 한다.

85) 1~7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보상심의 결과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아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보상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철홍, 2019, 13면. 현행법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단이 성폭행 피해 신청자에 대한 보상심의 결과를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는 피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다는 점, 당시 병원치료를 받기도 어려웠다는 점 때문에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피해여성 중 어느 한 사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구제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피해자들을 더욱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사실의 인정문제를 보상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분리시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재조사 진행시 목격자 등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술의 일관성, 현재의 정신과적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하여,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문제는 가해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문제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우위를 두고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궁극적인 과제로 남는다.

전옥○나 K양의 경우처럼 수사과정에서 당한 성폭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을 추적하면 가해자를 찾아낼 가능성⁸⁶⁾이 있지만, 길을 가다가 공수부대원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Y양의 경우처럼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설령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가해를 입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위원회는 성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신청기간(2015. 1. 1.부터 같은 해 6. 30. 까지)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86) 당시 합동 수사본부 직제표는 담당국장, 부국장 아래에 조정통제과, 수사1·2·3과, 특명반, 대공과 등 6개과에 66명이 일했다.

폭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2차피해를 무릅써야만 하는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의 구체성과 피해 정도를 중요시하여 피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사실이 밝혀지면 과연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이 또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억압기구에 의한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가해자들보다 엄중하게 죄를 묻고 처벌하여 젠더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해야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때문에 실정법상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피해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5·18항쟁전후에 발생한 성폭력은 사실상 전시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보고 처벌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⁸⁷⁾

V. 맺음말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5·18항쟁에서 여성들은 계엄군의 과시적인 공격으로 인한 성적인 침탈까지 겪어야 했던 이중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용기 있는 다양한 저항활동으로 맞서서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려는 순수한 연대를 만들어낸 항쟁의 주인공들이기도 했다.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해 출범한 ‘5·18진

87) 1968년 11월 26일에 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0년 11월 11일에 발효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제1조 b)항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협약의 비준국은 2018년 현재 50 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상조사위원회’가 5·18항쟁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완의 정의, 곧 정의실현을 지연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 모든 전쟁범죄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전시 성폭력이 법적 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젠더정의(gender justice)는 실현되지 못한 것이 된다. 전시 혹은 전시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5·18항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까지 국가기구를 통한 5·18진상규명조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공동조사단’의 조사 경험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 한계를 극복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조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성폭력의 진실규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특별법의 조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의 규정에 ‘성폭력범죄’를 추가하여 5·18항쟁기의 성폭력을 본격적인 조사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18진상조사위원회’안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당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항을 5·18민주화운동‘전후’로 개정하여 조사범위와 피해구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현행법은 조사대상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다룰 수 없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의 입법과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 못지않게, 일반적인 인권법체계 속에서 모색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증언과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피해구제와 보상,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과제에 대한 해답은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편), 『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도서출판 남풍, 1989.
-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 대응팀, 최용주 책임정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와 쟁점』, 5·18기념재단, 2019.
- 5·18기념재단, 이재의·최용주,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 해제』, 5·18기념 재단, 2018.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 1 : 2020년 상반기』, 2020. 7.
- 5·18연구소, 『5·18민중항쟁 증언자료집』 1, 전남대출판부, 2003.
- 5·18연구소, 『5·18민중항쟁 증언자료집』 1-4, 전남대출판부, 2003-2005.
- 광주민중화운동 기념사업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 창비, 2017.
-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외(편),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2010.
-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여성, 주체, 삶』, 도서출판 티엠씨, 2000.
-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노영기, 『그들의 5·18: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푸른 역사, 2020.
- 송선태,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 안진, 『지역여성의 현실과 전망』, 대왕사, 2003.
- 안진·오미란, 『민중항쟁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사 제8권: 여성운동』, 광주시·전라남도, 2016.
- 오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 오월여성회, 『오월여성의 이야기들』, 광주광역시, 2003.
-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 이광영·전춘심 외, 『광주민중항쟁증언록: 광주여 말하라』, 실천문화사, 1990.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황석영 기록), 풀빛, 1985.
- 정현애 외,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2019.
- Agamben, Giorgio (Translated by Daniel Heller-Roaz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Courtright, Paul, *Witnessing Gwangju*, CA: Hollym Press, 2020; 최용주 (역), 『5·18 푸른 눈의 증인』, 한림출판사, 2020.
- Lee, Kyungsoon, O'Bog Park & Jean Ahn,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13.

2. 논문

- 고정희,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월간 중앙』, 1988. 5월호.
- 권귀숙,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연구”, 『탐라문화』, 45호, 2014.
- 김귀옥,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 연구』, 3(2), 2012.
-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4·3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26(4), 1998.
-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4·3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권, 2001.
- 김영희,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2018.
- 김은실, “국가폭력과 여성-죽음정치의 장으로서의 4·3”, 『4·3과 역사』, 18호, 2018.
- 김철홍, “5·18항쟁과 계엄군 등 여성 성폭력”, 전남대 5·18연구소 집담회 발표자료, 2019.
- 박채복, “전쟁과 여성 폭력_독일 강제수용소의 강제 성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55(1), 2016.
- 안진, “5·18 광주항쟁과 여성”, 정진성·안진 외 (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 2004.

- ____, “5·18 광주항쟁에서의 여성의 피해, 그리고 생존”, 『여성과 평화』, 제4집, 한국 여성평화연구원, 2005.
- ____, “5·18 광주항쟁에서 여성주체들의 특성”, 『젠더와 사회』, 제6권1호,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
- 임선화,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국가폭력: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20.
- 장은백, “양민학살 사건 등 공소제기 가능성 여부검토”,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 대응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와 쟁점』, 5·18기념재단, 2019.
- 전용호, “5월항쟁과 여성의 투쟁”, 광주여성재단 콜로키움 발표자료, 2019.
- 홍희담, “깃발”, 『창작과 비평』(복간호), 창작과 비평사, 2003 소설집 『깃발』, 창작과 비평사, 1988.
- Ahn, Jean, “The Gwangju Citizen’s Resistance and Women”, *Contemporary Women’s History in Asia*, vol. 3, 2007, pp.88-113.
- MacKinnon, Catharine, “전쟁 시의 범죄, 평화 시의 범죄”(조시현 역), 『현대 사상과 인권』(옥스퍼드 엠네스티 강의),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 Shorrock, Tim. “Kwangju Diary: The View from Washington,” Jae-eui Lee, *Kwangju Diary*, CA: UCLA, 1999.
- 하세가와 히로코, “의례로서의 성폭력-전쟁 시기 강간의 의미에 대해서”, 코모리 요우이치(小森陽一) 외, 『국가주의를 넘어서』, 삼인, 1999.

3. 1차자료

- 검찰청·국방부 검찰부, 「12·12, 5·18사건 수사기록」 1~117권, 1994-1996.
-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상), 국방부, 2007.
- 대법원, 「12·12, 5·18 상고심 선고 판결문」, 1997. 4. 17.
- 류소영, 인터뷰 자료, 2019. 6. 8.
- 박영순, 구술 녹취자료, 2018. 2. 7.
- 보안사령부, 1982, 「제5공화국 前史」, 보안사, 1982.

서울고등법원, 「12·12, 5·18 항소심 선고 판결문」, 1996. 12. 16.

서울지방법원, 「12·12, 5·18 1심 선고 판결문」, 1996. 8. 26.

손옥례, 5·18관련 사망자 검시조서 54번 자료, 1980.

정대하, “충격적인 5·18성폭행, 진실 밝혀 단죄해야”, 한겨레 신문 2018. 5. 9.

———, “5월의 폭력에 여성들은 왜 말하지 못했나?”, 한겨레 신문 2018.

5. 10.

sbs, “그녀의 이름은”, sbs 스페셜, 2020. 5. 17.

<Abstract>

A Study on the Truth Revelation of the Female Victims in the 5·18 Uprising

- Focusing on Sexual Violence -

Jean Ahn*

This research is aimed to render some suggestions to the National Commission of Truth Revelation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order that it is able to investigate sexual violence occurred during/around 5·18 Uprising period. Female victims are various in 5·18 Uprising such as the dead, the injured, the arrested and the detained. The perpetrators of state violence committed the conspicuous sexual offences to horrify the resistant citizens whom they defined and treated ‘enemy’ in the quasi-war time.

However, female victims could not tell their story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trauma and the secondary victimization. This research has reviewed the experiences of the female victims in the feminist perspective, and raise th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ly, objects of investigation under the Special Law on the Truth Revelation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need to be expanded so as to include sexual violence to be stipulated in the current Special Law on the Sexual Violence.

Secondly, the specialized committee for sexual violence has to be made in the National Commission of Truth Revelation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from happening while investigation.

* Chonnam National Univ. Law School, Professor

Thirdly, provision on the period of investigation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period ahead /after the 5·18 Uprising since the current law is able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only in the period during the 5·18 Uprising.

Except for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Law, two more tasks are remained to reveal the truth of sexual offences by the state violence. The National Commission of Truth Revelation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lso need to make an effort to boost the social atmosphere to make victims feel comfortable to speak out their traumatic experience. Ultimately, the two legal questions that the sexual violence committed under the martial law, is able to be regarded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o punish the perpetrators in order to fulfill the gender justice, should be answered.

Key Words : conspicuous sexual violence, gender justice, secondary victimization, the Special Law on the Truth Revelation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National Commission of Truth Revelation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